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56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759,898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천시 C 창고 및 공장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기간 중인 2019. 3. 1.부터 2020. 7. 30.까지 사이에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청구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합계가 150,289,45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을 포함하여 193,049,348원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그 차액 42,759,8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193,049,348원에는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그 사건[이 법원 2021가단10816(본소) 임대차보증금, 2022가단108642(반소) 기타(금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3,391,4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액 계산에는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보다 초과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42,759,898원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